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 2012. 5.23]

[법률 제11100호, 2011.11.22, 일부개정]



◎ 제 ·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축산물 수입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입신고의무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련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바,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하는 행위,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등 수입신고의무와 관련한 금지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처분 등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 · 개정문]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서규용

◎ 법률 제11100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검사할 수 있다.”를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농림수산식품부령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축산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 4. 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 5.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성분규격 중 농림수산물 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

제20조의2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중 “제15조제1항”을 “제15조제1항·제3항”으로 한다.

제45조제2항제6호 중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수입신고를 한 자”를 “아니한 자”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문] (주요 골자만 편집게재)

[전문개정 2010.5.25]

제7조(가축의 도살 등) ① 가축의 도살·처리, 집유, 축산물의 가공·포장 및 보관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2>

- 1.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 2.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소와 말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자가소비(自家消費)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 3. 시·도지사가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의 종류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서 그 가축을 소유자가 해당 장소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조리하여 판매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 경우
-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가축을 도살·처리한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라 도살·처리한 가축의 식육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 ④ 제1항제3호에 따라 소·말·돼지 및 양을 제외한 가축을 도살·처리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위생적으로 도살·처리하여야 한다.
-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 기립불능 가축은 도살·처리하여 식용으로 사용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항에 따른 기립불능 가축에 대하여 질병검사를 실시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처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가축소유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 ⑦ 제5항의 적용 대상 가축 및 제6항에 따른 가축별 질병

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보상 기준·절차와 보상가격 산정 및 폐기 방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시행일 : 2012.7.1] 제7조

제8조(위생관리기준) ①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 24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 및 그 종업원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기준(이하 “위생관리기준”이라 한다)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영업자는 위생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영업자 및 종업원이 지켜야 할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
 2.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3.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4. 그 밖에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고 인정되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 ③ 제2항에 따른 자체위생관리기준의 작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9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① 농림수산물부장관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처리·가공·포장·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합되거나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별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농림수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해당 도축장에 적용되는 자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도축업의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고시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업소 또는 농장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대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⑥ 농림수산물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2

조제2항·제3항, 제18조,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제27조에 따라 영업정지(영업의 일부정지는 제외한다)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1년의 기간 이내에 2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5항 및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평가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6.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2항 본문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용하여야 하는 도축업의 영업자(종업원을 포함한다)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기를 희망하거나 지정을 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에게 위해요소중점관리에 필요한 기술·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라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지 아니한 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농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⑨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은 자에게 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등의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⑩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축장의 위생수준을 향상시

키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등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⑪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⑫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를 제9조의2에 따른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 제3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
2. 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3. 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실시기관, 실시비용 및 내용 등
4. 제10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5. 제11항에 따른 출입·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

[전문개정 2010.5.25]

제5조(수입축산물의 신고 등) ①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축산물에 대하여 통관절차 완료 전에 검사관이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국내의 검사기관

에서 검사를 받아 그 검사성적서 또는 검사증명서를 제출하면 이로써 전단에 따른 검사를 갈음하거나 그 검사항목을 조정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결과와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개정 2011.11.22>

③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한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11.22>

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신고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축산물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다만, 제22조에 따른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신고를 한 자가 축산물을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농림수산물부령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축산물을 재수입하는 행위
4. 제2항 후단에 따른 수입신고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
5.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한 성분규격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기준에 위반되는 축산물이라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신고하는 행위
- ④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항목·방법·기준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1.22>

[전문개정 2010.5.25]

제15조의2(수입·판매 금지 등)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처리·가공·포장·유통·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축산물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금지를 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을 급박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어 신속히 금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먼저 금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입·판매 등이 금지된 해당 축산물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 축산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한 영업자가 원인을 규명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하면 제1항에 따른 금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⑤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금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수 있다.

⑥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금지나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5.25]

제22조(영업의 허가) ①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가

지의 규정에 따른 도축업·집유업 또는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 또는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축산물보관업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을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장별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 제21조제1항제1호의 도축업을 하는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같은 작업장에서 도살·처리하는 가축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
 - 나. 같은 작업장에서 다른 종류의 가축을 도살·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수 없다.

1. 해당 시설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같은 장소에서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다만,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

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2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허가와 같은 종류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4.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금지산자이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5.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인 경우
6. 「도축장 구조조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도축장구조조정자금을 지급받고 폐업한 도축장이 소재한 같은 장소(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허가를 받은 부지를 말한다)에서 폐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도축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7.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8. 제27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정지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 ④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를 할 때에는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영업을 휴업, 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허가받은 사항 중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5조(품목 제조의 보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 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축산물을 가공하거나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식육을 포장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품목의 제조방법설명서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전문개정 2010.5.25]

제26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하였을 때에는 그 상속인이나 영업 양수인이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하 "양수인등"이라 한다)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 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7조(허가의 취소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제24조에 따라 신고한 영업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22>

1. 제4조제5항·제6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 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제3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4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5항, 제24조제2항, 제25조, 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5항·제6항, 제31조, 제31조의2제1항·제2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제22조제3항 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35조, 제36조제1항·제2항, 제37조제1항 또는 제42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축산법」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경우(도축장의 경

영자만 해당한다)

6. 「축산법」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업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도축장의 경영자만 해당한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계속 휴업하는 경우

2. 영업자(제22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사실상 폐업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 상속 또는 합병 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28조(과징금처분)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

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제9조제2항, 제17조,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 2. 과세 정보의 사용 목적
- 3. 과징금 부과기준이 되는 매출금액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30조(위생교육 등) ① 제11조제1항 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도축장에서 검사를 하는 검사관과 책임수의사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도축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2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와 제27조

- 및 제2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영업자(영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는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책임수역사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종업원은 매년 축산물 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 ⑤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영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책임수역사 또는 종업원으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검사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제5항 또는 제6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을 한 후 또는 검사업무나 영업에 종사한 후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실시 비용, 내용, 시기 및 방법(교육의 생략, 교육시간의 단축 등을 포함한다) 등은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도축업 또는 집유업의 영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을 할 때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축의 도살·처리 및 집유에 관한 사항
2. 가축과 축산물의 검사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3. 작업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4. 축산물의 위생적인 가공·포장·보관·운반·유통·진열·판매 등에 관한 사항
5. 축산물에 대한 거래명세서의 발급과 거래내역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가축 및 축산물의 위생적 관리와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전문개정 2010.5.25]

제31조의2(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 ① 영업자 또는 영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해당 축산물이 제4조·제5조 또는 제33조에 위반된 사실(축산물의 위해와 관련이 없는 위반사항은 제외한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축산물을 회수하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자는 회수계획을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보고하여야 하며, 그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결과를 보고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에 대하여 해당 축산물 등으로 인하여 받게 되는 제2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 회수계획, 회수절차 및 회수결과 보고 등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32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축산물의 명칭, 제조방법, 성분, 영양가 및 품질과 그 포장에 있어서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위표시, 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의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5.25]

제33조(판매 등의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처리·가공·포장·사용·수입·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썩었거나 상한 것으로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2.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것
3.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오염되었거나 그 우려가 있는 것
4.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혼입 또는 첨가되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5. 수입이 금지된 것을 수입하거나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것

6. 제16조에 따른 합격표시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것

7.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또는 제24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처리·가공 또는 제조한 것

8. 해당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

9.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판매 등이 금지된 것

② 농림수산물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 또는 집단급식소의 영업자가 제12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육 또는 제4조제5항·제6항, 제6조제2항·제3항 또는 이 조 제1항에 위반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사용·보관·운반 또는 진열한 경우에는 해당 영업의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그 영업허가의 취소, 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5.25]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적절하게 표시하지 아니한 자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살·처리한 자
 4.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 또는 운용하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보관·운반·진열 또는 판매한 자
 2. 제20조제5항 전단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5. 제29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6.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7.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책임수역사 또는 종업원을 그 검사 업무 또는 영업에 종사하게 한 자
 8.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9.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의 도살·처리 또는 집유의 요구를 거부한 자
 10.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11. 제35조에 따른 시설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에 따라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이 준수해야 할 사항 중 농림수산물 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41조를 위반하여 수수료를 받은 자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물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전문개정 2010.5.25]

부칙 <법률 제10310호, 2010.5.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9조의2제4항, 제20조제5항, 제30조, 제41조, 제43조제1호 및 제4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에는 제27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5항·제6항”은 “제30조제2항·제3항”으로 보고, 제47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3항”으로 보며, 제47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 중 “제30조제2항·제3항 및 제5항”은 “제30조제1항 및 제2항”으로 본다.

제3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영업자가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위해 축산물의 회수 등에 관한 적용례) 제31조 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축산물이 위반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압류·폐기 또는 회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공표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9조(폐쇄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폐쇄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0조(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9조제4항에 따라 2010년 12월 31일까지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기심사를 받아야 하며, 그 정기심사와 관련한 취소 또는 시정명령에 관하여는 종

전의 제9조제8항에 따른다.

제11조(자체검사원과 검사보조원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체검사원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책임수의사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보조원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치되거나 두어진 검사원으로 본다.

제12조(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위생 검사기관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하여지거나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보 되,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으로 보는 경우의 지정 유효기간은 이 법이 시행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을 “축

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0244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29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검사원”으로 한다.

제41조제4항 전단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③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④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⑤ 낙농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4호 및 제14조제2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 도축장 구조조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⑦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18조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⑧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마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⑨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⑩ 보건환경연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하여”를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로 한다.

⑪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⑫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제1항·제3항, 제13조제2항 및 제15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⑬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제1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⑭ 수의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⑮ 법률 제9950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⑯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6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⑰ 식품안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⑱ 식품위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⑲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제4조 및 제18조제1항제5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⑳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0호의 의제 대상 허가등란의 바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㉒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8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㉓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4호를 삭제한다.

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제3항 및 제4항 중 “축산

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㉕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 본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㉖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한다.

㉗ 법률 제10016호 축산자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및 제25조제3호 중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0호”를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㉘ 학교급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100호, 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